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21. 유상범의원 등 10인

나. 회 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1. 1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유상범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써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제도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자격 규정에 의존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기본계획·도입규모·허용업종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치·운영,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예산지원, 제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농·어번기의 인력난 해소 목적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및 향후 농·어촌 지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됨.

구체적으로, (1)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 규모 등 결정을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두는 내용(안 제19조의5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2) 법무부장관이 외국과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과 관련하여, 현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사업 지원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19조의5제3항이 전문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인바, 유사입법례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제4항부터 제6항)의 경

우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의 사유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처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명령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명확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9조의5 제7항, 제94조제11의2호 신설)과 관련하여,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인바, 현행법상 동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개정안을 반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 협의체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